

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

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## 1. 개정이유

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서류 준비에 따른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평가 및 적용시기 변경 (안 제13조 및 제15조제1항)

평가서류 제출기한을 2월 15일에서 3월 15일로, 결과 발표일을 5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

나. 우대사항 적용기간 변경 (안 제16조제2항)

평가결과 우대사항 적용(효력)을 발표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

다. 제출서류 추가 (안 제15조제1항 및 별지12호)

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(별지 12호 서식)을 신설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5월말”을 “6월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월 15일”을 “3월 1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(별지 12호 서식)

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우대사항 적용기간은 평가결과 발표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<b>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(대기업)</b>			
신청인	①상 호	②대 표 자	
청	③본사소재지	④전 화 번 호	
인	⑤법인(주민)등록번호	⑥업종 및 등록번호	
<p>국토교통부 고시 제20 -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. 20 . 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토교통부장관 귀하 (단위 : 백만원, %)</p>			
⑦총기성액(A)(국내분)		⑧총현장수(B)(국내분)	
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(C)(국내분)		⑩총협력업자수계(D)	
<b>1. 공동도급실적(10점)</b>			
가.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(5점)	(1)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(H) : (2)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(H/C) :		신청점수
나.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(5점)	(1)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(F) : (2)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(E) : (3)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(F/E) :		신청점수
<b>2. 하도급실적(20점)</b>			
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(20점)	(1)당년도 하도급기성액(G) : (2)총기성액 대비 비율(G/A) :		신청점수
<b>3. 협력업자 육성(58점)</b>			
가. 협력업자 재무지원 (40점)	(1)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(30점)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(15점) ②현금성 결제비율 (8점)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(5점) ④전자하도급계약 (2점) (2) 협력업자의 재무(5점) 및 교육지원 (5점)		신청점수
나.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(10점)	(1)기술개발비용 지원 (2)신기술 · 특허공법 공동개발 (3)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		신청점수
다. 상생협의체 운영 (5점)	(1)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(2점) (2)협의체 운영실적(3점)		신청점수
라.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(3점)	(1)해외 동반진출 건수 : 건 * 5건 이상 3점, 3~4건 2점, 1~2건 1점		신청점수
<b>4. 신인도 (12점)</b>			
가.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(2점)	(1)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(2점) : 회 (2)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(2점) : 회 (3)시·도지사 표창(1점) : 회		신청점수
나.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(10점)	(1)시정권고 · 시정명령 · : 회 (2)과태료 : 회 (3)고발 · 벌금 : 회 (4)과징금 : 회 (5)입찰참가제한 · 영업정지 : 회		신청점수
<b>5. 신청점수 합계</b> 점			
<b>6. 작성자</b> 직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HP:			
<p>첨부서류 : 1.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.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.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.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.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. 협력업자 지원 현황 7.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.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.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.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. 기타 사실확인서류. 끝.</p>			



[별지 12호 서식]

<b>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</b>										
평가신청업체		상호 :			대표자 :			업종(등록번호) :		
No	해외공사 현황			협력업자			공동도급(하도급) 실적			
	발주자 (국가명)	공사명	계약일자 / 준공일자	동반진출 형태 (‘공동도급’ 또는 ‘하도급’ 중 한 가지 기재)	상 호	사업자 등록번호	건설업 등록번호	계약일자 / 준공일자	공동도급 (하도급) 총계약액 (백만원)	공동도급 (하도급) 당년도 기성액 (백만원)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협력업자와 동반진출 한 해외공사 건수 :            건										

주) 1. “건설업등록번호”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해외 동반진출실적 불인정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평가시기) 건설업자간 상호                      령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                    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                     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,                      그 결과는 당해연도 <u>5월말까지</u> 발                      표한다.</p>	<p>제13조(평가시기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6월말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
<p>제15조(서류의 제출) ① 「건설산업                      기본법」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                      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자는 별지 1호, 중소기업인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                      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                      도 <u>2월 15일까지</u> 대한건설협회에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10. (신 설)</p>	<p>제15조(서류의 제출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3월 15일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0. <u>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                      출 실적 현황(별지 12호 서식)</u></p>
<p>제16조(평가에 따른 우대사항)</p> <p>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                      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.</p> <p>1. &lt;삭 제&gt;                      2. PQ심사 때 :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                    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                      지 <u>우대</u></p>	<p>제16조(평가에 따른 우대사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우대사항 적용기간은 평                      가결과 발표 시 정한 기간으로 한                      다.</p>